

청주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1나51991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재판경과

청주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1나51991 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 3. 3 선고 2020가단155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박은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신국희

피고, 항소인 B

변론종결 2022. 3. 24.

판결선고 2022. 4. 7.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 3. 3. 선고 2020가단155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20. 3. 1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1,028,9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1,028,9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내용

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실상의 상속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성격은 사실상의 상속포기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의 취소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각 성립의 요건과 효과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C의 피상속인인 D이 사망한 것은 2020. 3. 14.인 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루어진 것은 2020. 9. 1.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C 등 D의 상속인들 사이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루어진 시점은 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가 가능한 기간인 D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¹⁾,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회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사실상의 상속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물반환 가능 여부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법칙 또는 거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사해행위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부동산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채무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는 제1심법원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단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근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C에게 이전해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송인권, 판사 조희정, 판사 성찬용

별지

1)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의순위나 자격을 인식함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앎으로써 그가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등 참조).